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277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516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277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원

담당변호사 정도희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6.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가소16057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15,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2.부터 2021. 6.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15,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로써 항소취지도 같은 범위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30.경부터 2007. 11. 21.경까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C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77465호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5. 23. ‘원고에게, C와 D은 연대하여 6,17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C는 2,65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2.부터 각 2008. 3.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6.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7.경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에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E), 그 절차에서 ‘피고의 C에 대한 임금채권 3,300만 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의 2009. 5. 11.자 강제집행신청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서’라고 한다)가 제출되었다.

라. 위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서 ‘배당액 67,757,749원 중 합계 43,561,048원을 원고(임금채권자)에게, 합계 24,196,701원을 피고(임금채권자)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갑 제4호증)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09. 10. 22.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4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C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 중 18,415,936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부터 2008. 12.까지 C에서 근무하였고, 그 동안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C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에 피고의 이름이 없고(갑 제38호증), C가 피고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등(갑 제39호증), 피고가 C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② 1년 6개월 이상 급여를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C에서 근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상식적이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서가 C의 대표이사 D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에서의 필적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에서 근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18,415,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2.1)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6.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석준협, 판사 권양희, 판사 주채광

1) 피고는 C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임을 가장하여 2009. 10. 22.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09. 10. 22.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